2022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내 한복 관련 중소기업과 한류 콘텐츠(이하 한류 IP) 연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 활성화 및 국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『2022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』 공모를 추진합니다.
역량 있는 한복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□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2022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

○ 주　　최 : 문화체육관광부

○ 주　　관 :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

○ 사업목적 : 한복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한류 사업 모델 개발 및 국내외 진출 기회 제공

○ 사업기간 : 2022년 6월 ~ 2022년 12월

○ 지원대상 : 한류 IP(문화예술인)와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·제작할 수 있으며,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

[지원신청 부적격대상]
-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,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공정 거래 위원회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
-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
-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- 당해년도 동일사업·목적으로 국고 또는 지자체 지원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

○ 지원규모 : 1개 기업 당 2천5백만원 이내 (총 2억5천, 10개 기업(예정))

대상	지원금액	지원기업수	세부 수행내용
한류연계 한복상품 기획개발 참여기업	기업당 최대 2천5백만원 이내	10	- 한류 연계 한복 관련 상품 기획 및 개발 - 제작상품 홍보물 제작 및 판매 프로모션 참여, 유통 ※ 지원금액은 접수단계에서 사업에 필요한 적정 금액을 최대 2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선택하여 접수

* 최종 지원 기업 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공모내용

○ 참여기업 수행 과업

1) 의상 기획 및 제작

– 한류 IP의 분야 특성 및 콘셉트에 맞추어 최소 6착장 기획 및 개발

* 여성 IP : 김 연 아 (대한민국 前 피겨 스케이팅 선수)

한류 IP	콘셉트	착장수
여성 1인	평상복 최소 1착장 + 아트웨어*	4
남성 (없음, 남성모델 평균사이즈)	평상복 최소 1착장 + 아트웨어*	2
합 계		6

*** 아트웨어 : "특별한 날, 또는 무대에서 입을 수 있는 착장"**

* 추후 한류IP의 콘셉트에 맞춰 상호 협의 하에 제안한 기획 및 디자인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.

– 제작 유의사항

· 결과물은 기제품이 아닌 새로운 상품이어야 하며, 본사업 수행 이전 개발 진행 또는 완료된 상품은 인정하지 않음. **향후에라도 신규 개발이 아니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, 선정 취소**함.

* 단순 색상 변경 등은 1개 착장으로 간주함.

· 선정 기업은 **12착장 결과물 일체를 제작 후, 협의된 시기까지 주관처에 납품**하여야 함.

* 12착장 제출, 납품·검수 후 6착장은 기업에서 소장 및 활용

구분	착장 수	
개발	**총 6착장**	
제작 및 납품	**총 12착장**	6착장x2세트= 총 12착장 납품
	*악세서리 포함 풀착장 2세트 제작 및 납품	

· 제작 시, 한복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결과물에 적용함.

* 한복의 소재, 기법, 특징을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함.

2) 홍보 및 유통

– 결과물 전체는 한복웨이브닷컴(http://hanbokwave.com) 필수 입점,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결과물 홍보 (주관처에서 진행)

*한복웨이브: 본사업의 프로젝트명

– 주관처 통합 홍보 프로모션 이벤트 1회 필수 참여 (2022년 9월 예정)

- 기타 문체부 및 유관기관 (해외 문화거점 등) 전시 및 홍보 등 요청 시, 적극적인 참여 필수

3)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관련 협조

- 사업의 진행과정과 예산 집행내역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여 중간/결과/정산 보고 진행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정산, 정산·실적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

3-1) 지원금(국비) 사용범위

-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있어 집행항목 비율 준수하여 국비 예산계획서 작성

구분	범 위
운영비 (국비)	▪ **교부금은 한복상품개발 및 홍보/유통에 필요한 항목으로 일반수용비, 임차료, 재료비, 일반용역비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함** - (일반수용비) 전문가 활용비, 통번역비, 홍보물 제작비, 운영경비, 보관 및 운송비, 회계검사수수료 - (재료비) 상품 개발 재료비 :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재료비류) - (일반용역비) 용역계약을 통한 용역비 - (기타운영비)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※ 국비는 기재부 예산기금 집행계획대로 사용하여야 함 ▪ **국비 회계감사 수수료** - 교부금 집행분에 대한 회계검사 수수료 반영 필수 ※ 국고보조금 3천만원 미만 : 282,000원
	※ 상기 범위만 예산편성 편성 가능

※ 지원 제외항목(참여기업 부담)
: 인건비, 국내·외 여비, 부가가치세, 유류비, 간담회비, 접대비, 회의비, 연회비

□ 홍보 및 유통관련 지원사항

1) 홍보 및 유통

- 결과물(6착장 전체)은 주관처에서 제작하는 룩북(패션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) 및 영상·이미지류의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홍보 예정
- 결과물은 한복웨이브(프로젝트명)으로 주관처에서 일괄 홍보 및 마케팅 예정
- 결과물 전체는 온라인플랫폼 한복웨이브닷컴(http://hanbokwave.com) 에 업로드하여 온라인 홍보 연계

– 최종 선정 기업 10개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세부 과업범위 협의 예정

□ 추진일정

사업공모 및 선정	▶	참여기업 선정·지원금 교부	▶	중간보고	▶	결과보고	▶	상품 홍보	▶	성과 보고회
‘22년 6월		‘22년 6-7월		‘22년 8월2주		‘22년 9월4주		‘22년 9월 ~ 12월		‘22년 12월

○ **(선정·지원금 교부)**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참여기업 대상 업무협약 체결·약정,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 교부

○ **(사업수행 및 집행완료)** 중간·결과보고 및 성과보고회 참석, ‘22.11.30.까지 예산 집행완료

※ 개발 결과물 제출

구분	제출 결과물
착장 결과물	6착장x2세트= **총 12착장 제출** *악세서리 포함 풀착장 2세트 제작 및 납품
결과보고서	22.11.30. 집행마감 후 12.15.까지 지정양식 제출

○ **(홍보 프로모션 참여)**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진행 홍보 프로모션(‘22년 9월 예정) 필수 참여

○ **(정산 및 결과보고)** 사업수행 및 집행마감 후 1개월 이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집행정산 진행 및 정산·실적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(2022.12.15.까지 완료)

□ 심사 및 선정

○ 선정절차

공고 및 접수	▶	심의위원회 심사 (서류평가)	▶	심의위원회 심사 (발표평가)	▶	결과발표
‘22.06.10.(금)~ 07.01.(금)		7월 2주 예정		7월 2주 예정		7월 3주 예정

※ 상기일정은 주최/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심사방법 : 관련분야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

– 1차 서면평가 :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 진행

* 선정 기업 수의 2배수(20개 기업) 미만 접수 시, 서류평가 생략
* 신청건수 대상으로 적격심사 진행. 평가점수 70 미만인 기업은 자동 탈락

- 2차 발표평가 : 1차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수행계획 PT심사 진행
  * 2차 발표평가 대상자만 별도 발표자료 제출(자유양식으로 2차 평가 3일 전까지 제출)
- 선정 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
○ 결과발표 :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

○ 심사기준

평가항목	평가요소	비율
전문성	- **(기업 역량)** 상품 기획개발,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해 낼 수 있는 기업의 전문적 역량 여부 - **(기업 경험)** 기업 및 참여인력의 유사 과업 경험 여부 - **(해외진출 준비도)** 진출 희망 지역 이해도, 진출 및 현지화 전략, 진출경험 등 - **(전문적 역량)** 한복의 구성과 요소에 관한 이해 및 활용도	30
차별성	- **(기획 독창성)** 기획의도 및 과업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- **(기획 완성도)** 기획 및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- **(콘텐츠, 제품시장성 및 차별성)** 지원대상 제품의 해외 진출시 시장성 및 차별성	20
구현성	- **(과제이해도)** 목표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- **(사업/예산계획 구현성)** 사업 전반 과정에 따른 이해도, 적정한 예산계획 수립여부 및 사업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, - **(한류콘텐츠 연계 활용도)** 연계방안의 현실성 및 구체화 정도 등	20
파급성	- **(한류콘텐츠 연계 파급효과)** 효과적인 한류 연계를 통해 한복문화 확산, 한복 산업 성장에 대한 파급효과 도출 가능성 - **(사업의 효과성)**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, 계획 및 전략의 일관성, 현실성, 유통망 진출 등 사후관리방안, 산업전반에 대한 기여도	30
합계		100

*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 1~2차 평가 진행

□ 신청방법

○ 공고 및 접수 기간 : 2022년 6월 10일(금) ~ 7월 1일(금) 15:00 도착분에 한함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(hanbok@kcdf.kr) 접수 * 오프라인 접수 불가

-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(www.kcdf.kr)홈페이지 공모요강 내 지정양식을 내려받아 작성
-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
* (압축파일명 : 2022_한류한복공모_기업명.zip)
* 발급 서류는 원본 제출, 작성 서류는 한글파일/PDF파일 두가지 형태 모두 제출
*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 불가

○ 제출서류

번호	서류명	비고	번호	서류명	비고
1	공모신청서	양식1	8	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	양식4
2	사업계획서 (예산 등 지정양식)	양식2	9	국고·지자체 지원금 수혜내역	양식5
3	대표자 이력	양식3	10	청렴·윤리 실천 서약서	양식6
4	사업자등록증	-	11	성희롱·성폭력 예방 서약서	양식7
5	중소기업확인서	-	12	지원사업 보안각서	양식8
6	법인등기부등본 (개인사업자 경우 주민등록등본)	-	13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-
7	법인인감증명서 (개인사업자 경우 개인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)	-	14	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(개인사업자 경우 대표자 개인의 납부 증명서 제출) *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	-

□ 유의사항

○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서류는 접수마감일 마감시간(2022.07.01.(금) 15시)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함.
- 참여기업은 선정위원회 구성, 심의기준, 심의과정,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심의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.
- 심의에서 탈락한 참여 기업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.
- 당해연도 기준, **유사한 사업 내용 (한복 분야 의상 개발 등)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지원 예정인 기업은 본 공모에 지원이 불가**함. 추후(선정 후 및 사업 진행, 완료 후 포함)에라도 중복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질 시, 선정을 취소함.
- 참여기업이 공고안 내 제시된 지원신청 부적격대상에 해당할 경우, 추후에라도 선정을 취소함.
- 참여기업이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주관처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,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

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함.

- 지정된 제출형식이 아닐 경우 제출자료로 인정하지 않음.
-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,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,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함.
- 주관처 관계자(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)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참여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- 본 공모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.
- **사업 진행 중 선정 취소 사유 발생 시, 참여기업에 교부한 지원금은 주관처의 절차에 따라 전액 환수함을 원칙으로 함.**

-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,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◦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◦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 ◦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

○ 선정 후 유의사항

- 참여기업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음. **정당한 요청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또는 과업 수행**

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, 참여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사업 진행과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.
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.
- 참여기업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. **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반드시 상호 협의를 한 후 주관처의 승인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**될 수 있음.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 기업에 있음.
- 참여기업은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 및 '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'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.
- 참여기업은 홍보물 제작 시 후원, 주최, 주관 등의 명칭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홍보물(포스터, 도록, 영상 등) 제작, 설치 시 주관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.
- 참여기업은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, 계약목적물을 협의된 시기 내에 주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함.
- 참여기업은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 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주관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계약금액의 30/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관처에 배상하여야 함.
-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혹은 참여기업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.
- 참여기업이 최종 제출한 **과업수행 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검사 전·후를 불문하고 민·형사상 책임을 참여기업이 감수**하여야 함.
- 참여기업이 주관처에 보고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민원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, 주관처는 계약상대자(참여기업)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.
- 참여기업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3자의 저작권, 산업재산권, 소유권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/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확보,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기업이 지도록 함.
-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

실시하며 참여기업은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, 이를 최대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.

- 참여기업이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과업기간 내 관련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변경·폐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.
- 기타 본 공고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에 따름.
- 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목록

  : 표준재무제표증명,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/소득세징수액집계표 중 최소 1종, 법인·개인·신용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*선정 후 상기서류 미제출 및 증명서 발급불가 경우 선정을 취소함

□ 문의처

○ 관련문의: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복문화팀 사업담당자

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이지원 주임	02-398-1622	hanbok@kcdf.kr
최서연 주임	02-398-1624	